

광주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합508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D

5. 주식회사 E

6. 주식회사 F

7. 주식회사 G

8. 주식회사 H

9. 주식회사 I

10. 주식회사 J

11. 주식회사 K

12. 주식회사 L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익 담당변호사 김익건

피고주식회사 M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울 담당변호사 문성탁

변호사 임치용

변론 종결2024. 11. 5.

판결 선고2024. 12. 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N 사이에 2023. 10. 6. 체결된 [별지] 기재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저축은행들이고, 주식회사 N(이하 '이 사건 채무자'라 한다)은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했던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23. 4. 27. 및 2023. 5. 16. 이 사건 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5,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2023. 4. 27.	A	3,000,000,000	① 대출기간 : 24개월② 이자: 연 10%③ 연체이자 : 연 13%④ 매월 분할상환⑤ 연대보증인 : 주식회사 P, Q
B	1,500,000,000		
2023. 5. 16.	C	1,000,000,000	
D	1,000,000,000		
E	1,000,000,000		
F	1,000,000,000		
G	1,000,000,000		
H	1,000,000,000		
I	1,000,000,000		
J	2,000,000,000		
K	1,000,000,000		
L	500,000,000		
합계	15,000,000,000		

다. 피고는 2023. 10. 4. 이 사건 채무자에게 1,9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23. 10.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R(이하 피고와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가 2023. 12. 1.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S 주식회사 등(이하 'S'라 한다)에 납품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채무자는 2023. 12. 4.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2024. 3. 6. 광주지방법원 2024회합5009호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의 개시를 신청하였다가 2024. 7. 9.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이 사건 채무자는 2023. 4. 11. 기준 한국산업은행, T, U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회사채 등 합계 약 555억 원의 채무가 있고, 2023. 12. 11. 기준 피고에 대하여 합계 3,650,220,708원의 채무가 있으며, 원고들은 2024. 1. 22. 이 사건 채무자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4차전100928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잔액 10,597,535,111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채무자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채무자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유일한 적극재산인 영업재산 및 영업권 일체를 양도한바,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들은 이 사건 채무자에게 2023. 4. 27. 및 2023. 5. 16.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채무자로부터 2024. 1. 22. 기준 합계 10,597,535,111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들이 이 사건 채무자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한 이후인 2023. 10. 6. 체결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의 존재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업권'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권'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이루지 아니하므로, 그 재산권에 관련된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이탈된 재산을 채무자에게 회복시키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면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위 대법원 2009다1057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채무자와 피고사이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졌어야 한다(위 대법원 2013다841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7호증, 을 제2, 4, 15, 16호증의 각 기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기초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양도계약 제1조는 '본 계약은 이 사건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가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장, 기계 설비, 인적 조직 등도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양도계약 제6조 제1항은 '본 계약은 법인 양도·양수계약이 아닌 거래처 계속거래 및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함이 목적인 사업권(경영권 포함)양도·양수계약이므로 갑의 부채, 자산 및 고용관계 등과는 별도의 계약 체결임을 쌍방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사건 채무자는 사업장 내의 기계기구 사용 및 제품생산, 공장관리 운영에 대한 권리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이 사건 공장이나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볼 수는 있어도 이 사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영업재산을 전부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채무자는 2021. 11. 2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공장 건물과 위 건물 부지를 매도한 후 이를 위 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해왔는데, 피고 등이 위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주식회사 R는 이 사건 채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중 일부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을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이 사건 공장의 인적 조직을 그대로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나아가 주식회사 R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W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건 채무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지 않았다.

③ 한편 S 소속 담당자는 2024. 2. 16. '이 사건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위 회사가 공급하는 품목을 주식회사 R로 이관하여 부품 공급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주식회사 R는 이 사건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S와 거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관계가 형성된 것은 S의 선택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에 따라 S가 반드시 피고 등과 사이에 부품납품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거나, 피고 등이 S가 다른 제3의 부품업체로부터 이 사건 채무자가 생산하던 부품을 납품받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주식회사 R와 S 사이에 형성된 거래관계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사업권을 양수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다만 피고 등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면서 S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바 사실적 내지 경제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영업양도가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실적 내지 경제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영업양도가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영업양도계약이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양도로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10224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 제6조 제1항은 이 사건의 채무자의 부채, 자산 및 고용관계 등과는 별도의 계약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시적인 영업양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채무자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채무자에게 대여한 1,90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체결한 것이며, 담보 대상은 사업권이지 공장 및 설비는 아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채무자의 설비와 공장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얻은 것에 불과함에도 임의로 주식회사 R에 이 사건 공장 및 설비에 관한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주식회사 R는 이 사건 공장 및 설비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바 이러한 이 사건 채무자의 행위 및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처럼 이 사건 채무자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권리(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이전해준 것일 뿐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한 것은 아닌데, 이 사건 사업권에 관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 방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바 이 사건 사업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이루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법률행위인 이 사건 양도계약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설령 이 사건 사업권에 관하여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이 사건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사업권은 크게 '이 사건 공장 및 기계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부품 생산의 허락 및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내용의 '사업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거래처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할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공장의 고용관계가 피고 등에게 그대로 승계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로 영업 및 생산 기술 등이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위 '사업권'은 결국 이 사건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실체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물에서 이 사건 공장 및 기계 설비에 관한 임차권 등을 포함한 영업재산 대부분이 제외되어 있는바 이처럼 영업재산과 분리된 상태의 '사업권'의 독자적인 재산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그 재산적인 가치가 얼마인지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② 다만 '이 사건 공장 및 기계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경우 사용차권 유사한 권리로서 일정한 재산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채무자 및 피고 등이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은 사용차권 유사한 권리는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그 재산적인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③ 이처럼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전된 권리인 '이 사건 공장 및 기계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사업권'은 그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무자가 위 권리들을 이전함으로써 인하여 책임재산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 등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 영업이익을 취득하고 있고 이 사건

채무자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거두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채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나, 원고들이 요건사실을 입증하여 피고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이 사건 채무자 및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더 많아질 수 있었는데 증가하지 않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적극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여 이 사건 채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어느 모로 보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상호

판사장유나

판사김대욱

별지